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53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 박덕흠 · 최보윤 · 안철수

강대식 · 김소희 · 이헌승

박정하 • 이양수 • 김성원

나경원 · 서천호 · 최은석

박정훈 · 김민전 의원

(14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작황과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 현장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 경영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해 오던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학계, 농업 현장 등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 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정책보험이 효과적인 경영안정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를 위해사업관리기관의 정책보험사업 관리 권한을 강화하였음.

주요내용

- 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명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 (안 제명).
- 나.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어업 정책보험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함(안 제2조 제2호 등).
- 다.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안 제4조)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정함(안제5조제1항제1의3호 신설).
- 라.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업무를 추가함(안 제11조의3).
- 마. 정책보험상품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상품 다양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신설).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책보험사업 자에게 정책보험사업 및 위탁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2

항).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피해"를 "피해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따른"을 "따른 손해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6호 중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을 "농어업정책보험사업(이하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 2. "농어업정책보험"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 나. 어업재해보험: 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 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 상하기 위한 보험

제2조의2제1항 중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

험(이하 "정책보험""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재해보험 발전"을 "정책보험 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제3호 중 "재해보험"을 각각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중 "재해보험"을 각각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재해보험 등의 심의)"를 "(정책보험 등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을 "정책보험 및 농어업정책재보험"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 정책보험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을 "농어업정책재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재해보험 및"을 "정책보험 및"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재해보험 및"을 "정책보험(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은 제외한다) 및"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해보험"을 각각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재해보험의 종류 등)"을 "(정책보험의 종류 등)"으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재해보험의"를 "정책보험의"로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임산물재해보험"을 각각 "임산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 및 임산물

제6조제1항 중 "재해보험에서"를 "정책보험에서"로, "재해보험의"를 "정책보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7조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보험사업을"을 "정책보험사업을"로, "재해보험사업의"를 "정책보험사업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사업의"를 "정책보험사업의" 로,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재해보험의"를 "정책보험의"로, "재해보험 안 내자료"를 "정책보험 안내자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각각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한다.

제11조의7제1항 본문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 중 "재해보험사업자에게"를 "정책보험사업자에게"로, "재해보험사업자는"을 "정책보험사업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을 "정책보험가입자가 정책보험"으로, "재해보험계약"을 "정책보험계약"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자는 정책보험사업"으로, "재해보험 업무"를 "정책보험 업무"로 한다.

제15조 중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자는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17조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해보험사업"을 각각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재해보험가입자"를 "정책보험가입자"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를 "정책보험사업자의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해보험가입자"를 "정책보험가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보험에 가입할"을 "정책보험에 가입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각각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21조 중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으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농어업정책보험사업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각각 "정책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각각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재해보험 제도"를 "정책보험 제도"로 한다.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① 정부는 정책보험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신 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8조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정책보험사업자는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의"를 "정책보험의"로, "재해보험가입자"를 "정책보험가입자"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자에게 정책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② 제20조, 제25조의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책보험사업자에게 정책보험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위탁 업무 처 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책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각각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9, 제2

5조의2제2항제4호, 제30조제2항, 제3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한다.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한다.

③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으로 한다.

- ④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제8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9조제1항 제2호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각각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한다.
- 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정책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 제1조(목적) -----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 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 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 ----- 피해나 시장가격 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 농어업정책보험-----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 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 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 2. "농어업정책보험"이란 다음 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 가.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 한 보험을 말한다. 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 한 보험 나. 어업재해보험: 어업재해 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3. • 4. (생략)

- 5.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 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 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 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
- 6. "시범사업"이란 <u>농어업재해</u> 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 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 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 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말한다.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
<u>한 보험</u>		

- 다. 농업수입안정보험 : 농업 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 해에 따른 손해 또는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 하기 위한 보험
- 3. 4. (현행과 같음)

5											
	叫.	른	손	해니	- メ	기징	가	격	변	동,	<u>0</u>
	로	인	한	수	月)]	감/	<u> </u> 소어) t	다른	<u> </u>	- —
											- —
	_										

험사업(이하 "정책보험사업"-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u>농어</u> 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 3조에 따른 <u>농업재해보험심의</u> 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u>재해보험</u>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u>재해보험사업</u>의 발전 방향 및 목표
- <u>재해보험</u>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 3. <u>재해보험</u>의 대상 품목 및 대 상 지역에 관한 사항
- 4.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한 지원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u>재해보험</u>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립·시행) ①
업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
<u>농업정책보험심의회</u>
<u>정책보험 발전</u>
<u>.</u>
②
1. <u>정책보험사업</u>
2. <u>정책보험</u>
3. <u>정책보험</u>
4. <u>정책보험사업</u>
5 <u>정책보험</u>

3	농	림축식	산식	품부	장괸	과	해 '	양
수십	간부	·장관	은	기본	계획	에	TT-	라
매닉	년	재해.	보험	발	전 -	시행	계	획
(0)	하	"入] ਰੋ	행계	획"이	기라	한대	구)-	을
수	립 •	시행	하여	야	한다			

④ ~ ⑥ (생 략)

- <u>재해보험</u>에서 보상하는 재해
 의 범위에 관한 사항
- 2.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3. (생략)
- 4. <u>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u>(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 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5. (생략)
- 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농업재

3
<u>정책보험</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정책보험 등의 심의) 정
책보험 및 농어업정책재보험
<u>농업정책보험심의회</u>
·.
1. <u>정책보험</u>
2. <u>정책보험사업</u>
3. (현행과 같음)
4. <u>농어업정책재보험사업</u>
5. (현행과 같음)
6 <u>농업정</u>

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위 원장이 <u>재해보험 및</u>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 저 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소속으로 <u>농업재해보험</u>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생략)
- 2. <u>재해보험</u>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4. (생략)
- ②・③ (생 략)
-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

<u> 책보험심의회</u>
<u>정책보험 및</u>
제3조(농업정책보험심의회) ① 정
책보험(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은 제외한다) 및 -
<u>농업정책보험</u>
<u>심의회</u>
1. (현행과 같음)
2. <u>정책보험</u>
3.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
· 1 정책
1. <u>/ 8 平</u>

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농림축산식품부의 <u>재해보험</u> 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
- 3. 4. (생략)
- ⑤ ⑥ (생 략)
-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u>농업재해보험</u>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 ⑧ (생 략)

제2장 <u>재해보험사업</u>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u>재해</u>

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 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 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u>보험</u>
2 <u>정책보험</u>
3. • 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u>정</u> 책보험
<u>.</u>
⑧ (현행과 같음)
제2장 <u>정책보험사업</u>
제4조(정책보험의 종류 등) 정책
<u> 보험의</u>
임산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
보험
임산
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이 각각 관장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u>농업재해보험심의회</u>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이 고시한다.

1.·1의2. (생략) <u><신 설></u>

2. · 3. (생략)

② (생 략)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u>재해보</u> <u>험에서</u>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 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u>재해보험의</u> 종류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u>재해보험</u>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①
<u>농업정책보험심의회</u>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 물 및 임산물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u>정책보</u>
<u>험에서</u>
<u>정책보험의</u>
 ② 정책보험

제'	7조	<u>:</u> (노	현	가입]자) <u>z</u>	내 해	보	<u>험</u> c	ᅦ	가
	입	할	수	있는	- 자	는	농	림	쉅,	축	산
	업,	Ó	ᅣ식	수십	·남업	에	종	사	하는	<u>-</u>	개
	인	또	는	법석	인으	로	하	고,	구	체	적
	인	보	험 /	가입	자의] 7	기준	은	대	통	령
	렁	Òį	己 :	정한	다.						

제8조(보험사업자) ① <u>재해보험사</u> 기 <u>업을</u>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삭 제
- 2.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u>재해보험사업</u>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u>재</u> 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 야 한다.
- ③ (생략)
- ④ 제2항에 따른 <u>재해보험사업</u> 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u>재</u> 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 (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 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제7조(보험가입자) <u>정책보험</u>
제8조(보험사업자) ① <u>정책보험사</u>
<u>업</u>
,
2. ~ 3. (현행과 같음)
② <u>정책보험사업</u>
<u>을</u>
<u>정</u>
책보험사업의
③ (현행과 같음)
④ <u>정책보험사업</u> -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u>정</u>
<u> 책보험사업의</u>
<u>"정책보험사업자"라 한다)</u>
<u>는 정책보험</u>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 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 로 산정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② <u>재해보험사업자</u>는 보험약관 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모집) ① <u>재해보험</u>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u>재해보험의</u>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u>재해보험 안내자료</u>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제98조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u>재해보험사업자</u>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

1.•2. (현행과 같음)
② 정책보험사업자
<u>.</u>
제10조(보험모집) ① <u>정책보험</u>
<u>.</u>
1. ~ 3. (현행과 같음)
② <u>정</u> 책보험의
<u>정책보험 안내자료</u>
<u>정책보험사업자</u>

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농 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 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 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이 법 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 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 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 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생 략)
 - ② <u>재해보험사업자</u>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 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 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 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 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 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보험사업자
<u>.</u>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u>정책보험</u>
사업자

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③ 정책보험사업자-----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 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 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손해 평가인 상호간에 담당지역을 교 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손해평가의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 농작물재해보험, 농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업수입안정보험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 ① 정책보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

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 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 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u>재해보험사업자</u> 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 며, <u>재해보험사업자는</u>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u>재해보</u> <u>험</u>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 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u>재해보험</u> <u>가입자가 재해보험</u>에 가입된 보 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u>정책보험사업자에</u>
<u>게</u>
<u>정책보험사업자는</u>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u>정책보</u>
<u> 청</u>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u>정책보험</u>
<u>가입자가 정책보험</u>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 정책보험계약-----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4조(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 제14조(업무 위탁) 정책보험사업 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 자는 정책보험사업-----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 <u>보험 업무----</u> 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 다. 제15조(회계 구분) 재해보험사업 제15조(회계 구분) 정책보험사업 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 자는 정책보험사업-----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 야 한다. 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 제17조(분쟁조정) 정책보험-----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다.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 정책보험사업-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 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 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 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 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

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 의 범위에서 <u>재해보험가입자</u>가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u>재해보험시업자의 재해보험의</u>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u>재해보험가입자</u>가 부담하는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 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

<u>.</u>
· ② <u>정책보험사업</u> -
제19조(재정지원) ①
정책보험가입자
 정책
보험사업자의 정책보험
<u> </u>
<u>정책보험가입자</u>
②
거 채 ㅂ 처 시 어 기
<u> 정책보험사업자</u>

- 야 한다.
- ③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u>재해보험에 가입할</u> 경우에는 제1항에도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④ (생 략)제3장 <u>재보험사업 및</u><u>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u>
-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u>재</u> <u>해보험</u>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u>재해보험사업자</u>와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u>재해보험사업자</u>가 정부에 내 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 라 한다)에 관한 사항
 - 2. · 3. (생략)
 - ③ (생 략)
- 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u>.</u>
③
정책보험
<u> </u>
<u> 기 / 1 日 근</u>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재보험사업 및
<u>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u>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책
보험
 -
②
<u>정책보험사업자</u>
1 전체비청시어가
1. <u>정책보험사업자</u>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기금의 설치)

협 9	의하여	공동,	으로	재보	.험시	-업
에	필요한	<u>사</u> 재원]에	충당さ	하기	위
하여	여 <u>농</u> 여	<u> </u>	해재	보험	기금((0)
하	"기금'	"이라	한디	나)을	설치	한
다.						

-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지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 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 급
 - 3. ~ 5. (생략)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위탁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8조제2항에 따른 <u>재해보험</u>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3. (생 략)
 - 4. 그 밖에 <u>재해보험사업</u>과 관 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
0 1 日 6 行 川 工 日 7 日
제25조의2(농어업정책보험사업의
<u>관리)</u> ①
<u>정책보험</u>
사업
,
1. <u>정책보험사업</u>
2. 정책보험
3. ~ 5.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u>정책보험</u>
<u>사업</u>
3. (현행과 같음)
4 <u>정책보험사업</u>

하는 업무

- ③ (생략)
-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② (생 략)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해보험사업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7조(시범사업) <신 설>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 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 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 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정책보험사업</u>
<u>정책</u>
보험 제도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시범사업) ① 정부는 정책
보험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신규 보험상
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시범사업
<u>을 할 수 있다.</u>
② 정책보험사업자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고양하고 <u>재해보험</u>의 가입을 촉 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 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지수립) ① <u>재해보험사업자는 농</u>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 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u>정책보험</u>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u>정책보험사업자는 정</u>
<u> 책보험</u>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보고 등) <u>①</u>
<u>정</u>
<u> 책보험의</u> <u>정책보</u>
헌가입자
<u>정책</u>
보험사업자에게 정책보험사업-
② 제20조, 제25조의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책보험사업자에게 정책
보험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위

- 제32조(과태료) ① <u>재해보험사업</u>
 <u>자</u>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u>재해보험사업자</u>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 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 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 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
 - 2. · 3. (생략)

탁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정책보험사업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
구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과태료) ① <u>정책보험사업</u>
<u>자</u>
② <u>정책보험사업자</u>
<u>.</u>
1. ~ 3. (현행과 같음)
③
1
정책보험사업자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